①재입국 출국 중에 재류기한이 경과된 분, ②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한이 경과된 분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에 대하여

2020년 6월 26일
(2022년 10월 7일 갱신)
출입국재류관리청
Immigration Services Agency of Japan

아래 ① 및 ②와 같이 제출 서류를 간소화합니다. 또, 일반 신청보다 신속히 심사합니다.

	①재입국 출국 중에 재류기한이 경과된 분	②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분
대상	○ 재입국 출국 전과 활동 내용이나 신분 관계가 바뀌지 않은 분. ○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사이에 재입국 허가에 따른 입국 기한이 만료되는 분 (주1) 재류기한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분으로, 기한 내에 재입국할 가망이 없는 분도 대상입니다. (주2) 재입국 허가 간주도 포함합니다. (주3) '고도전문직 2호'로 재류하고 있던 분은 종래의 활동에 따라 '고도전문직 1호' (이(イ), 로(ロ), 하(ハ) 중의 하나)를 신청해 주십시오.	○ 지난번 신청 내용과 바뀐 것이 없는 분. ※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보통 3개월간 유효하지만 특례로서 동 증명서의 작성 시기에 따라 각각 유효로 간주하는 기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여기로). 이 유효기간이 경과된 분이 대상입니다. (주) 입국 예정일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한이 경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도 대상입니다.
필요 서류	• 신청서 ※ 재류 자격에 맞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 받아들이는 기관 등이 작성한 이유서 ※ 별첨의 참고 양식(별표1용, 별표2용)을 참조하고 작성하여 주십시오. • 기존의 재류 카드 사본 ※ 카드에 기재된 정보가 확인 가능한 것이라면 사진이나 FAX도 가능.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양식 자유)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신청서 ※ 재류 자격에 맞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 받아들이는 기관 등이 작성한 이유서 ※ 별첨의 참고 양식(별표1용, 별표2용)을 참조하고 작성하여 주십시오. • 이미 교부받은 재류자격인정증명서(원본 또는 사본) ※ 사증(비자) 신청 시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제출한 것 등을 이유로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 설명서(양식 자유) 또는 사증(비자) 신청접수증(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	• 2023년 4월 30일까지	• 2023년 1월 31일까지

➢ . 처리 기간은 둘 다 2주일 정도 걸립니다 ①은 지난번 허가 후에, ②는 지난번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후에 신분 관계 등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 등에는 필요에 따라 기타 입증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심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래 조처는 2023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자세하게는 각 링크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재류 자격 '영주자'와 '정주자 및 특정활동' 중 고시(告示)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 지정되는 분은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의 대상 외이므로, 재외공관에서 사증(비자)을 신청하여 주십시오(자세하게는 여기(영주자) 또는 여기('정주자' 및 '특정활동'). 또한, 그 외의 재류 자격을 희망하는 분으로 일본에 신청 대리인을 맡을 분이 없는 경우에도 재외공관에서 사증(비자)을 신청하여 주십시오.